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방안**  
**-부산광역시(사상구, 사하구, 북구)를 중심으로-**  
**Fire-countermeasures of Majority-used Buildings**  
**-Centering around Busan Metropolitan City-**

이순구<sup>†</sup> · 공하성\* · 한상용\*\*

Soon-Goo Lee<sup>†</sup> · Ha-Sung Kong\* · Sang-Yong Han\*\*

부산 사하소방서, \*청운대학교 건축설비소방학과, \*\*동신대학교 대학원 소방학과  
(2007. 7. 3. 접수/2007. 8. 3. 채택)

### 요약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실제 화재발생건수는 많지 않으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많아 사회적문제가 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대책 마련에 급급하여 온 것이 사실이며, 부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다행히도 정부에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코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요즘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종류의 다중이용시설이 복합·집적(集積)화 되는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의 형태를 갖추는 업소가 늘고 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이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런 형태의 건물은 방화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의 피난인원이 많고 복잡한 미로형태를 가진 방호공간이 되어 향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출입자의 비상구 위치확인 습관과 소방안전의식 제고, 건물주(영업주)의 자율 방화관리 역량제고, 실내장식물 불연화, 소방 당국의 교육·홍보·제도개선 등 삼위일체식 안전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 ABSTRACT

The occurrence of fires in heavily populated multiplex buildings is a serious concern. It causes a great threat to many people and a serious social problem. Whenever this kind of fire happens, the authorities are busy preparing partial countermeasures to control the crisis situations. Luckily, the government has enforced a special law regarding safety supervision of majority-used buildings to prepare the basic countermeasures for the buildings' safety. Recently, the multiplex buildings which have multi type compounds have increased in size by getting bigger and bigger. As there are many people who would need to escape and the complicated structures like mazes in buildings of this type, it is not only difficult to prevent a fire but also easy to cause a large loss of lives. For a better fire safety supervision of the buildings, there needs to be passers and owners' good sense of safety, fire proof of the buildings and education of the fire authorities.

**Keywords :** Multiplex buildings, A special law, Majority-used buildings

## 1. 서 론

### 1.1 연구의 목적

1990년대 초반 노래방 기기가 일본에서 수입 보급되면서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생겨나고, 1997년 말 불어 닥친 IMF 경제 한파의 영향으로 많은 실직자들이 퇴직금을 이용하여 비교적 경영이

수월하다고 생각되는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등의 업소 개업과 최근 짐질방, 고시원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가 늘어나게 되어 빠른 사회 변화에 보다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다중이용업소<sup>1)</sup>의 특성은 영업 성격상 룸(Room)을 설치하게 되므로 내부구조가 복잡하게 되어 있으며, 가연성 실내장식물의 설치로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 우려가 높고,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되므로 피난 상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sup>†</sup>E-mail: soongoo119@hanmail.net

이에 따른 화재방어 및 진화가 곤란한 실정이다.

1999년 인천 인현동 호프집화재(사망 56명, 부상 81명), 2000년 경기 성남 아마존 유흥주점화재(사망 7명), 2002년 군산 개복동 대가 유흥주점화재(사망 15명)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또한, 2006년 7월 19일 서울 송파구 나우 고시텔(사망 8명, 부상 12명) 화재<sup>2)</sup>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케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다중이용업의 소방·방화시설에 대한 기준들을 새로이 보강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비상구 등 소방·방화 시설 소급 적용과 지침 보완 등으로 소방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과 실내구조 형태 및 내장 재료의 유독성, 가연성, 다양성 등으로 인한 위험성이 잠재하고 있어, 유사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이고 기술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관리자나 종업원 등의 수시 교체로 안전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어 교육이나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현재 다중이용업소는 신종업소를 포함하여 184,540개의 업소가 전국에서 성업 중에 있다.<sup>3)</sup> 그러므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원인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소방 안전관리방안을 모색하여 안전의 실효성 확보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둔다.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신종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한 다중이용업의 인명안전을 위하여 다중이용업 관계자의 설문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다중이용업소는 소방·방화시설 규정을 포함한 법 제적인 보완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관계 당사자들의 안전의식 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다.

새로 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의 양적·질적인 급성장과 화재발생시 영업주의 대처능력부족으로 많은 피해(인명, 재산)가 발생하고 있어서, 손님 보호책임 강화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정되었다고 한다.<sup>4)</sup>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의 주된 요인은 출입자들의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과 비상대피 통로를 찾지 못해 일어난 것이다.

토요 휴무제 시행과 더불어 복합적인 신종업종이 생겨나고, 그만큼 국민의 안전 욕구도 높아져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고 사료된다.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에 관한 특별법」 규정 무시, 폐쇄성과 은밀함을 즐기는 출입자의 취향 등도 인명피해의 한몫을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실내가연물의 화재성상에 미치는 영향 및 비상 대피 공간, 방염처리에 관한 제도개선도 범위에 포함하였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상구, 북구 지역에서 영업 중인 19개 업종과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포함하여 200개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및 화재안전의식, 최근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 등을 알고 있는지, 현장 방문하여 설문조사하였다.

직접 대면하지 못한 업소에는 관할 119안전센터장에게 사전 교육 후 의뢰하여 방문 조사하도록 하였다.

## 2. 다중이용업소의 실태분석

### 2.1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사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의 특징은 한건의 화재발생에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화재발생빈도에 비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영업주와 출입자 모두의 안전 불감증과 실내 가연물의 유독성, 비상탈출구를 찾지 못해 미처 탈출하지 못한 점,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 날 때마다 대책마련에 급급하여온 정부당국의 정책 등도 한 몫 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증명하는 대표적 화재사례를 보면 1995년 부산 중구 남포동 자이언트 노래방화재(사망 8명, 부상 2명), 1999년 인천 중구 인현동 히트노래방 화재(사망 56명, 부상 81명), 2005년 대구 수성 시티월드 짐질방 화재(사망 5명, 부상 53명), 2006년 서울 송파구 나우 고시텔 화재(사망 8명, 부상 12명)<sup>5)</sup> 등이다.

### 2.2 설문조사 결과분석

다중이용업소의 현황에 대하여 Table 1을 살펴보면 관계인이 73.0%, 직원이 27.0%로 주로 영업주 등 관계인이 질문에 답을 하였다.

다중이용업소의 근무나 운영기간은 3개월 미만이 (12.0%), 3~6개월(5.5%) 6개월~1년(13.0%), 1년~2년 (19.5%), 2년 이상이 (50.0%)로 종업원은 3개월 미만에서 1~2년 사이에 많이 종사했고, 관계인은 2년 이상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설문 조사한 영업장의 위치는 지하 2층 이하(1.0%), 지하 1층(35.5%), 1층(8.5%), 2층~4층(48.5%), 5층 이상(6.5%)으로 대부분 지하 1층과 지상 2층~4층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임대료와 출입자의 선호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 된다. 성별은 남자(60.5%)

Table 1. Majority-used buildings situation

질문 사항	사례수 (명)	백분율 (%)
1. 다중이용업소와 관계	200	100.0
① 관계인(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	146	73.0
② 직원(종사원)	54	27.0
2. 다중이용업소에서 근무나 운영한 기간	200	100.0
① 3개월 미만	24	12.0
② 3~6개월	11	5.5
③ 6개월~1년	26	13.0
④ 1년~2년	39	19.5
⑤ 2년 이상	100	50.0
3. 영업장 위치	200	100.0
① 지하 2층 이하	2	1.0
② 지하 1층	71	35.5
③ 1층	17	8.5
④ 2층~4층	97	48.5
⑤ 5층 이상	13	6.5
4. 성별	200	100.0
① 남자	121	60.5
② 여자	79	39.5
5. 연령	200	100.0
① 20대	32	16.0
② 30대	30	15.0
③ 40대	89	44.5
④ 50대	47	23.5
⑤ 60대	2	1.0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내용의 숙지 여부	200	100.0
① 알고 있다	155	77.5
② 전혀 모른다	45	22.5

와 여자(39.5%)로 남자가 여자보다 빈도가 높았다.

연령대는 20대(16.0%), 30대(15.0%), 40대(44.5%), 50대(23.5%), 60대(1.0%)로 20~30대는 아르바이트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대가 40~50대가 많은 것은 영업주(관계인)가 직접 경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알고 있다(77.5%)와 전혀 모른다(22.5%)라고 응답을 했고 대부분 알고 있다가 높게 나타났으나, 22.5% 정도의 관계인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성할 것으로 보인다.

Table 2. Sense of fire safety

질문 사항	사례수 (명)	백분율 (%)
7.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 여부	200	100.0
① 있다	73	36.5
② 없다	127	63.5
8. 업소내의 비상구 위치	200	100.0
① 정확하게 알고 있다	177	88.5
② 대충 아는 편이다	23	11.5
9. 주변 계단 또는 복도에 가연성 실내장식물 설치	200	100.0
① 있다	36	18.0
② 없다	162	81.0
③ 무용답	2	1.0
10. 화재발생 통보시 행동	200	100.0
① 즉시 피난	26	13.0
② 먼저 손님들을 안정	159	79.5
③ 경비실에 문의	2	1.0
④ 주변 동정을 살핍	13	6.5
11. 화재안전성 확보 위해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할 점	200	100.0
① 관계인 및 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소방안전교육	144	72.0
② 건물설계자의 안전의식 전환	30	15.0
③ 관련법규 및 제도의 개선	4	2.0
④ 실내장식물의 불연재 사용	11	5.5
⑤ 잘 모르겠다	9	4.5
⑥ 기타(①,②)	2	1.0

화재안전 의식에 대한 Table 2의 조사에서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에 대한 질문에는 변경한 적이 있다(36.5%)와 변경한 적이 없다(63.5%)라고 답을 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특성상 명의변경과 내부 구조변경이 실제로 빈번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명의가 변경되면 즉, 영업주가 바뀌면 영업 분위기 쇄신과 개업에 따른 새로운 실내장식으로 방염처리가 결락(缺落)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실내 룸을 증설하거나 큰 실로 만들기 위해 2~3개의 룸을 하나의 룸으로 합치는 과정에서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하지 않고 내부 구조변경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어떤 업주는 출입구의 방화문이 미관상 보기 싫어 관할 소방서의 안전시설 원비증명 발급 당시에는 설치

부착하였으나, 영업개시 시점에 제거하여 버리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투자가 아닌 낭비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업소내의 비상구 위치를 묻는 질문에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88.5%)와 대충 아는 편이다(11.5%)로 대부분 관계인과 종업원이 비상구 위치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충 아는 편이다 라고 일부 답한 사람은 관계인(영업주)의 직원 안전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주변 계단 또는 복도에 가연성 실내장식물 설치에 대하여 있다(18.0%)와 없다(81.0%)로 주변 계단 또는 복도에 가연성 실내장식물이 일부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내 계단 등에 미관을 고려하여 가연성 실내장식물을 설치하였다면, 비록 방염처리나 난연처리가 되어있더라도, 연소 시 피난통로를 차단하고 유독가스를 발생하여 질식사와 소방공무원의 진압에 차질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화재 발생 통보 시의 행동으로는 먼저 손님들을 안정(79.5%)시키고 즉시 피난한다(13.0%)라고 답한 사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할 점에 대한 설문에서는 관계인 및 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소방안전교육(72.0%)과 건물설계자의 안전의식 전환(15.0%)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방화관리에 대한 인식도 Table 3의 조사에서 화재발생시 행동 요령 1순위는 손님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61.0%)시키고, 119에 신고하고 소방시설을 활용 화재진압(29.0%)을 한다 라고 조사되어 고객들의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으로 나왔다.

또한, 소방시설의 사용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잘 알고 있다(66.5%)와 조금 알고 있다(31.5%)로 응답되었다. 이 부분의 조사는 영업주 뿐만 아니라 종업원들에 게도 소방시설 사용방법을 숙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방음(또는 흡음) 등을 위하여 창문 구조변경을 한 적이 있는가를 관계인에게 설문한 결과 있다(37.0%)와 없다(63.0%)로 나왔다. 편법적인 구조변경 근절을 위하여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건축 당시에 창문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방음과 흡음, 은은하고 안락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존에 설치된 창문을 임의로 폐쇄하여 영업을 했거나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가연성 합판과 스티로폼을 채워 넣는 등 화재발생시 화약고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과정에서 가연성 합판 등에 방염처리를 결락(缺落)하고 내부구조 변경 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도 않는

Table 3. Recognition of prevent a fire

질문 사항	사례수 (명)	백분율 (%)
12. 화재발생 시 행동 요령 1순위	200	100.0
① 즉시 피난	13	6.5
② 손님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	122	61.0
③ 119에 신고하고 소방시설을 활용 화재 진압	58	29.0
④ 기타(②,③)	7	3.5
13. 소방시설의 사용방법	200	100.0
① 잘 알고 있다	133	66.5
② 조금 알고 있다	63	31.5
③ 잘 모르겠다	4	2.0
14. 방음(또는 흡음)을 위하여 창문 구조 변경 (관계인)	146	100.0
① 있다	54	37.0
② 없다	92	63.0
15. 종사원에 소화·통보·피난 등의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관계인)	146	100.0
① 있다	108	74.0
② 없다	38	26.0
16. 소방안전교육의 필요성(관계인)	146	100.0
① 필요성이 있다	140	95.9
② 필요성이 없다	6	4.1
17. 관계인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소방훈련 및 교육을 받은 경험(종사원)	54	100.0
① 있다	28	51.9
② 없다	26	48.1
18. 소방교육 및 훈련 받았다면 교육효과 (종사원)	54	100.0
① 있다	30	55.6
② 없다	24	44.4

경우가 정밀 검사 결과 드러난 경우가 혼다하다.

종사원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 한 적이 있는가 라고 관계인에게 질문한 결과 있다(74.0%)와 없다(26.0%)로 종사원의 소방훈련 및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있는가의 질문에는 필요성이 있다(95.9%)와 필요성이 없다(4.1%)로 소방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관계인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소방훈련 및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를 종사원에게 설문한 결과

있다(51.9%)와 없다(48.1%)로 종사원에게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의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방교육 및 훈련을 받았다면 교육의 효과에 대하여 종사원에게 묻는 설문에서는 있다(55.6%)와 없다(44.4%)로 관계인은 소방교육의 실시에 대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고, 이에 반해 종사원은 있다와 없다가 거의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1 안전관리상 문제점

##### 3.1.1 현행법으로 규제받지 않는 다중이용업 존재

웰빙 문화 확산과 토요휴무제 시행 등으로 새로운 형태의 다중이용업소가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스포츠 마사지 업소, 안마시술소 등의 형태는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

안마시술소의 업종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방염처리 규제를 받고 있다.

스포츠 마사지 업소형태는 밀실 형태의 커튼을 친 층은 공간으로 화재발생 시 그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영업장도 신종 다중이용업으로 분류하여 소방 사각지대가 없도록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마사지업, 비디오방업, 숙박(침실제공)을 동시에 운영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운집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성인 체험방, 노인스포츠 센터 등도 빠른 시일 내 소방안전시설 완비증명을 발급 받아 영업토록 사전 규제해야 할 새로운 업종이다.

##### 3.1.2 건물구조에 생소한 불특정 다수인의 간헐적 출입

다중이용업소는 특정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출입하여 근무하는 업무시설 등과는 다르다.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인들이 간헐적으로 출입하는 장소이다. 출입자가 비상구 등의 위치확인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출입하는 사람들이 건물의 구조에 익숙하지 못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비상 탈출구를 찾지 못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다가, 참변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물구조에 익숙하지 못한 출입자들은 사전에 영업장 내부 비상구 위치 정도는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3.1.3 다양한 유형의 가연성내장재와 실내장식물 사용

다중이용업소는 손님 유치를 위해 다양하고 특이한 내부 장식이나 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건축물내의 가

연률은 벽체, 바닥, 천장, 내장재나 문등의 구조체에 고정되어 있는 고정가연률과 가구, 침구류, 의류 등의 실내에 수납되는 적재가연률이 연소하여 피해를 일으키는 현상으로 가연률의 재질, 형상 또는 배치상태에 따라 출화 및 연소 확대 성상을 좌우한다.<sup>6)</sup>

특히, 바닥에는 카페트를 깔고 벽 및 천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내장재와 장식품을 설치한다. 손님들의 기호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화재 시 유독가스를 다양으로 발생시킴으로써 질식으로 인한 사망자를 발생시키기 쉽다. 바닥재는 연소확대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유독가스 등을 배출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또한 바닥재에 대한 방염처리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시설이라 화재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를 방지하는데 화재안전성능구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따라서 화염 및 연기발생농도가 큰 고정가연물과 적재가연물 모두 인명안전도모를 위해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한 번에 전체가연물의 방화성능(Fire Performance)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고정가연물에 대한 방화성능의 확보가 선행되어야하고, 순차적으로 적재가연물에 대한 방화성능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실효성 있는 화재안전 레벨유지가 가능하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특히, 각각의 영업형태에 따라 잠재화재 위험성이 차이가 있고, 지하층에 위치하느냐 고층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화재 및 피난 등 방화특성이 다를 수 있다.

##### 3.1.4 내부구조 및 명의의 빈번한 변경

다중이용업소는 특성상 영업 상태에 따라 업주의 명의변경이 빈번하며 업주가 바뀔 때마다 룸 변경 등 내부구조나 인테리어를 재차 시공하게 되어, 소방·방화 시설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 3.1.5 업주의 안전관리의식 부재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출입자의 안전의식도 문제지만 영업주의 부족한 안전 관리의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업주들은 영업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만큼에 비례하여 소방안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하지 않고, 방염처리를 결락하고 영업을 하여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업주도 있다.

##### 3.1.6 창문의 임의구조 변경으로 무창충화

건축 당시에 창문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방음과 흡

음, 은은하고 안락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존에 설치된 창문을 임의 폐쇄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여기에다 합판을 설치하고 스티로폼을 채워 넣어 화재 발생시 화약고 역할을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설문결과 37%의 업소가 창문을 구조 변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3.1.7 자율 방화관리 체계 미흡

대부분의 영업주들은 손님접대 및 영업이익에 비중을 두어 관련규정도 숙지하지 못하고, 상황이 발생되면 어찌할 바를 모른다. 초기 진화도 못 할뿐더러, 고객들의 인명 대피유도도 제 때에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업원도 수시로 교체되어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다. 최근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내용도 전혀 모르고 있는 업소 관계자가 23%로 조사 되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3.2 개선 방안

### 3.2.1 안전시설 완비증명 발급제도 개선

첫째, 현행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스포츠마사지업, 성인 체험방, 노인스포츠 센터 등)에 대한 관할소방서장의 안전시설 추진권을 부여하여 차기 법개정 시까지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다중이용업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둘째, 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완공신고를 현행 영업주 신청제도에서 소방시설의 설계·공사·방염 등의 공사업자가 책임임시공 신고토록 하여 영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전시설 설치 전문화에 기여토록 한다.

### 3.2.2 방염 후 처리 제도 개선

첫째,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 위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에 방염도료 등의 방염약제가 어느 기간 동안 효력이 지속 될지 이에 대한 규제와 정해진 기간이 없는 실정이고, 또한 관할 소방관서로부터 한번 방염필증을 교부 받고나면 오랜기간이 경과되어도 영구히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방염후처리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재성능시험제를 도입하여 부분적인 내부 구조변경으로 인한 방염 공백과 방염후처리 물품에 대한 연소지연내지 억제 효과를 빌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영업장 안의 실제 화재발생시 소파, 침구류, 장식장, 의자 등의 적재가연물에서 연소 확대 및 유독가스가 발생하므로 실내장식물의 범위에 천장과 벽체는 물론 바닥과 출입구 계단실을 포함하여, 고정가연물과

적재가연물 모두 방염 처리대상에 포함하여 출입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소지연 및 억제 효과를 기대해야 할 것이다.

**3.2.3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행정명령개선**  
출입구 등의 미관을 고려한 업주의 방화문 제거, 비상구 전후 장애물 적치 또는 방치, 비상구 폐쇄 시는 상황이 발생되면 인명피해의 소지가 있어 시급한 사항이므로 시정보완기간의 부여가 불필요하며, 적발 즉시 당일 시정조치 권한을 부여하여 원상복구 등 안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 3.2.4 피난안내도 작성 및 비치

다중이용업소의 내부구조 및 피난동선의 유형을 파악하여 피난안내도를 작성하여 비치토록 하고 이용자로 하여금 화재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

### 3.2.5 홍보강화 및 신고포상금제 실시

다중이용업소의 업주와 고객들의 안전불감증 홍보와 교육을 소방관서가 아닌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매스컴과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방안이 강구 되어야 하겠다. 또한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시 제때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경찰관에서 실시했던 도로교통법위반 신고제와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훼손 신고 포상금제와 같은 방안을 도입하여 신고자에게 과태료 처분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방관서, 영업주, 국민들의 관심 제고와 비상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한다.

## 4. 결 론

최근 다중이용업소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계속 발생되고 있으며 다중이용업소의 형태를 보면 지하화, 밀집화, 대규모화되고 복잡 다양할 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 시 그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또한 화재건수에 비하여 인명피해 발생의 비율이 훨씬 높은 실정이다. 원인은 대부분 피난통로를 찾지 못하거나 패닉(panic) 현상과,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실내계단 등에 미관을 고려하여 가연성 실내장식물을 설치한다면 상황발생시 연소로 인하여 피난대피통로를 차단하는것과 같다. 불쏘시개 역

\*1999.10. 30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27번지 히트노래방 화재시 2층에 위치한 라이브Ⅱ호프집

할을 하는 가연성 실내장식물은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역할도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은 업주들이 영업상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영업주와 출입자 모두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또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투자가 아닌 낭비개념으로 인식하여 영업주들이 투자를 기피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각종 건축물에는 화재 피해의 잠재적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으며, 특히 공간면적에 비해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는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이 늘어나고 업종별로도 다양한 형태이다. 예를 들면 하나의 점질방 형태의 영업장이 점질방, 숙박, 헬스, 비디오방 기능도 동시에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축건물은 설계자가 건축물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시, 완공 후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피난과 방화적인 면을 철저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존건물은 건물 신축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정에 따라 건물주 또는 업주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신축당시 설치된 소방·방화시설도 기능이 점점 노후 된다. 따라서 영업주의 안전관리 대응능력 함양과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비상대피통로 확보, 화재발생시 초기 진화와 고객 안전 확보 등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다수의 사람이 유독가스로 인하여 질식사하고, 종사원의 안전관리 의식부재, 영업주의 도덕적 해이 등도 문제가 있어 관계자의 기본적이고 자율적인 방화안전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므로 다중이용업

소 소방안전관리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자 한다. 첫째, 영업주와 종사원의 소방에 대한 기본상식과 안전시설 유지관리 철저, 상황발생시 대처요령 등 정부차원의 안전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

둘째, 출입자들의 소방안전의식 제고와 상황발생시를 대비한 출입 시 대피통로(비상구) 확인 습관이 필요하며 건물지하층에는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이 없을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설치를 금지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소방당국)의 신종업소 및 기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단속·규제강화, 제도개선 등 삼위일체식(영업주, 출입자, 정부)안전관리가 이루어야 하고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범위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신속히 확대하여 안전후진국을 벗어나 안전한국(SAFE KOREA)실현이 앞당겨질 것이다.

## 참고문헌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4호.
2. 소방방재청, “소방대응 및 행정자료 통계”(2006).
3. 소방방재청, “소방행정 자료 및 통계”(2007).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주요내용 설명자료(2006).
5. 소방방재청, “소방대응 행정 자료 및 통계”(2006).
6. 박형주, 곽동일, “다중이용업소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재에 대한 방화·방염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Vol.15, No.1, pp.47-54 (2001).